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인사 01117-218	(전화: 731-6222)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149	
시행일자	'87. 2.		
보조 기관	부시장	전 결	협조 기관 법무담당관 심사팀
	내무국장		
	인사과장		
기안책임자	보임계장 박승룡		1987. 2. 7 1987. 2. 09 1987. 2. 09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신 명의	시 장
제 목	87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시행계획		
(제1안) 내부결재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7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별첨 공문과 같이			
공고하고 별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안 : 별 첨 나. 공고일 : '87. 2.			
다. 신청기간 : '87. 3. . . - '87. . . . (5일간)			
첨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1부. 끝.			
(제2안)			

1505-25(2-1) 일/1)갑
85. 9. 9. 승인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인사 01117-218	(전화: 731-6222)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149	
시행일자	'87. 2.		
보조 기관	부시장	전결	법무담당관 심사필 협조 기관
	내무국장		
	인사과장		
기안책임자	보임계장 박승룡		발 송 인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조	발신 명의	시 장
제 목	87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시행계획		
(제1안) 내부결재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7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별첨 공문과 같이			
공고하고 별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안 : 별첨 			
나. 공고일 : '87.2. 			
다. 신청기간 : '87.3. . .-'87. . . . (5일간)			
첨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1부. 끝.			
(제2안)			

87 上半期 名譽退職 施行計劃

1. 對 象 : 2級以下 一般職 및 技能職, 消防正監
이하의 消防公務員으로서 20年以上 在職하고
정년1年以上 5年以内의 자

◦ 5급이상 : 27.1.1~30.12.31(60세-56세)
(상병 35.12.31)

◦ 6급이하 : 30.1.1~33.12.31(57세-53세)
(상병 38.12.31까지)

2. 手當支給

◦ 일반퇴직 : 퇴직월봉금액 $\times \frac{1}{2}$ \times 잔여월수

◦ 상병퇴직 : 퇴직월봉금액 $\times \frac{1}{2}$ \times 지급규정배수

3. 日程別計劃

◦ 시보공고 : 87.2.16~86.3.15(1개월)

◦ 신청접수 : 87.3.16~86.3.20(5일간)

◦ 심사결정 : 87.4.20(예정)

3P-1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동 건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7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할 것이며 명예퇴직 신청에 관하여는 아래 요령에 의거 희망자는 신청할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가. 대상자 : 2급이하 일반직및 기능직 지방공무원과 소방정감이하

의 소방공무원

1) 명예퇴직

○ 5급이상(정년61세): 27.1.1-30.12.31

○ 6급이하(정년58세): 30.1.1-33.12.31

2) 상병퇴직

○ 5급이상(정년61세): 35.12.31까지

○ 6급이하(정년58세): 38.12.31까지

나. 신청기간 : '87.3.16 - '87.3.31

다. 작성요령

1) 근속년수 : 수당지급 신청개시일 기준

2) 정년일 : 6월말(당해년도 1.1-6.30까지 출생자)

나. 공고(안) : 별 첨

첨 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안 1부. 끝.

3) 정년잔여기간 :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계시일로부터 정년일 까지(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 연장전의 정년을기준)
4)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 일반퇴직 : 퇴직월 봉급액 x $\frac{1}{2}$ x 잔여월수
○ 상병퇴직 : 퇴직월 봉급액 x $\frac{1}{2}$ x 지급규정배수
5) 정년잔여기간 계산 : 15일이상은 1월, 15일미만은 계산치 없음. 단 상병퇴직자는 6월이상은 1년, 6월미만은 계산 하지 않음.
6) 신청서는 인사과에서 수령하기 바람.
참 부 : 공고안 1부. 끝.
수신처: 전기관.
(계3안) 33
수신 : 공보관 발신처: 인사과장무국장
제 목 : 시보계제 의뢰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7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 : '87. 2. . .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공고상자	1987. 2. 11. 오
담당자	신정철
부서	서울특별시 소방정감

1987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계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7. 2.

서울특별시장

1. 명예퇴직대상자

- 2급이하 일반직및 기능직 지방공무원과 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공고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
- 가.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5년이내에 자진 퇴직하는자
- 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년초과 10년이내 자진 퇴직하는자

2. 명예퇴직신청

- 가. 신청기간 : '87. 3. ~ '87. 3. (5일간)
- 나. 신청절차 : 명예퇴직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후 시장에게 제출할것.

3.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및 통지

서울특별시장은 명예퇴직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4. 명예퇴직 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당지급

명예퇴직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며 소속장은 참조 예산담당관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요구하여 지급한다.

6.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청배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